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9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송**	송** 1956-01-05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	무단전출
전**	전** 1946-07-31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가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양 해인 문의전화 : 02-3396-6530)

2015년 09월 04일

회현동장 인